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098)

2025. 09. 0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098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5. 08. 11.

다. 회부일자 : 2025. 08. 14.

#### 2.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 중인 서울광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다. 재계약 만료도래로 재위탁 절차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있는 단체(“법인등”)를 선정하여 종합적·효율적인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26. 2. 7. ~ 2029. 2. 6.(3년)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238,515천원('25년 예산)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 2025년 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25.7.18.) : 적정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24.12.)

##### ○ 추진 필요성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허브기관(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임
-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서울형 자활사업 개발·운영, 자활사업 홍보, 자활생산품 판로 개척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서울광역자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적·지속적 자활서비스 공급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이 있는 단체(“법인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사무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창업 및 사업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자활생산품 홍보·판로개척·전시회 개최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및 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라. 위탁시설 개요

- 설립일자 : 2010.11.9.
- 시설위치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목동 514-18)
- 시설규모 : 1,089.96㎡(건축 연면적 330평)
- 시설구성 : 지상 1층(공용 1층 홀 자활상품전시관), 205호(교육장 및 회의실), 305호(사무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1항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등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광역자활센터의 협약 기간이 ‘26년 2월 6일로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sup>1)</sup>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 민간위탁 개요

- 사무명 :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
- 위탁사무
  - 광역단위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취업·창업 및 사업지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각종 지원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자활생산품 홍보·판로개척·전시회 개최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등 지원
  - 위탁시설의 재산관리 및 기타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범위 : 시설형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6. 2. 7. ~ ‘29. 2. 6.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서울광역자활센터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사)서울지역자활센 터협회	‘10.11.9~ ‘26.2.6. (총 5회)	1,238백만원 (25년 예산)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자활사업 관련 주요현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법 제9조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sup>2)</sup>에서는 자활급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주요 목적임.
- ‘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한 『2024 자활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2024년 54,379명이며, 참여자를 보장별로 구분하면, 조건부수급자(30,293명), 일반 수급자(14,166명), 차상위자(5,24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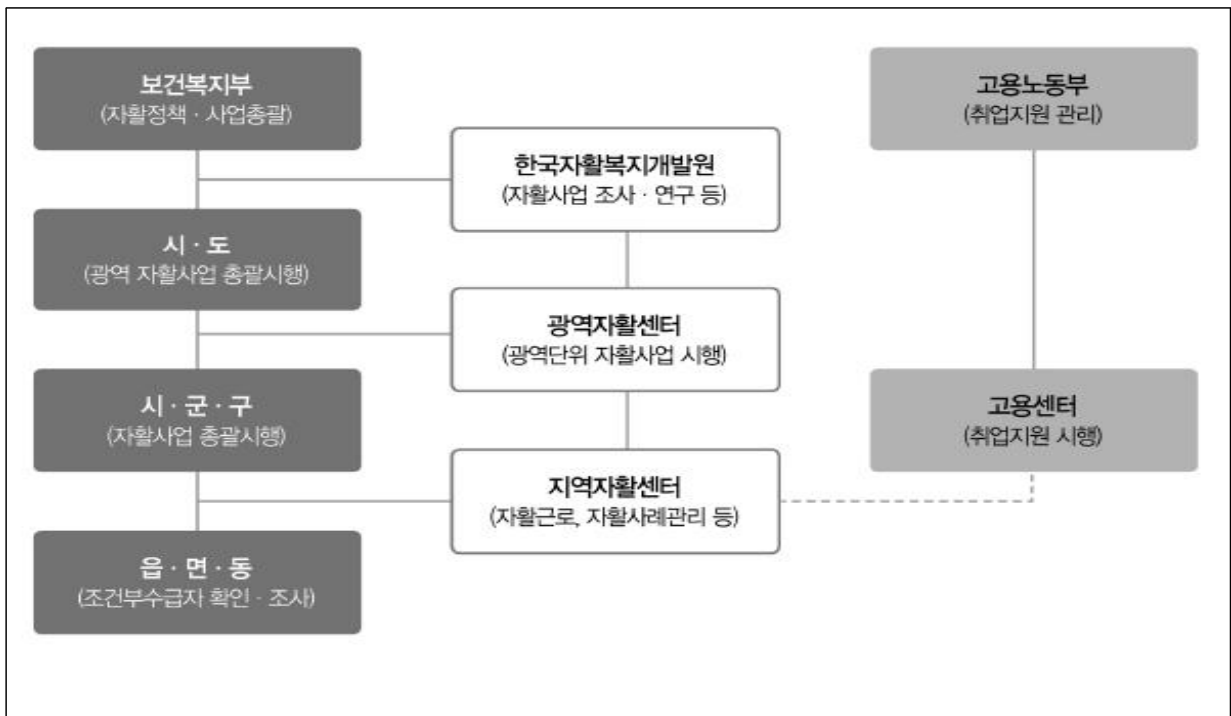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나.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법적 근거 및 필요성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sup>3)</sup>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임.



[그림] 자활사업 추진체계<sup>4)</sup>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광역자활센터)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
3.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도
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2025), 『2025년 자활사업 안내』

- 해당 사무는 기초단위(25개 자치구, 3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사무로,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서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및 운영 현황

- 서울광역자활센터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초부터 현재까지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광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경과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최초위탁	3년 ('10.11.09.~'13.11.08.)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2차 재계약	3년 ('13.11.09.~'16.11.08.)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재계약	
(변경협약)	+90일 ('16.11.09.~'17.02.06.)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변경협약)	
3차 재계약	3년 ('17.02.07.~'20.02.06.)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재계약	
4차 재위탁	3년 ('20.02.07.~'23.02.06.)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5차 재계약	3년 ('23.02.07.~'26.02.06.)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재계약	

- '25년 6월 기준 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설립일)	시설규모(㎡)					비고 (위탁 만료일)
		공공시설 (건축물)	대 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종사자	
서울광역자활 센터	양천구 공항대로 630 어바니엘 2~3층 ( '10.11.9.)	지상1층 (자활상품전시관)	233.32	688.1	401.86 (1층 홀 40.71 포함)	14명	('26.2.6.)
		지상2층 205호 (교육장 및 회의실)					
		지상3층 305호 (사무실)					

- ‘25년 센터 예산액은 총 1,238백만원으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665백만원)로 지원되며 자활종합경영 지원 등 자활사업에 관한 비용은 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57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최근 2년 서울광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성과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서울광역자활센터 주요 사업성과 (최근 2년)

주요사업 내용	‘23년			‘24년		
	사업성과 (실적/목표)		달성률	사업성과 (실적/목표)		달성률
<b>5개 사업</b>	<b>3,508</b>	<b>2,976</b>	<b>117.9%</b>	<b>3,396</b>	<b>3,129</b>	<b>108.5%</b>
①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건)	45	35	128.6%	34	29	117.2%
경영컨설팅지원	29	21	138.1	13	13	100
디자인개선지원	5	5	100	6	6	100
시설장비지원	9	9	128.6	13	8	162.5
사후관리컨설팅	2	2	100	2	2	100
② 자활교육훈련(명)	2,514	2,032	123.7%	2,234	2,041	109.5%
교육훈련	2,475	1,991	124.3	2,193	2,000	109.7
자격증취득지원	38	40	95	40	40	100
자활사업민관합동워크숍	1	1	100	1	1	100
③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건)	664	641	103.6%	833	783	106.4%
자활기업	94	80	117.5	202	153	132
사업단네트워크	88	83	106	103	88	117
신규개발사업	61	46	132.6	60	50	120
서울형자활사업	409	420	97	456	480	95
자활사례관리지원	-	-	-	-	-	-
광역자활센터관리운영	12	12	100	12	12	100
④ 자활유통활성화(건)	129	123	104.9%	130	123	105.7%
판로개척	100	95	105.3	101	95	106.3
자활상품업그레이드	29	28	103.6	29	28	103.6
⑤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건)	156	145	107.6%	165	153	107.8%
자활사업조사	1	1	100	1	1	100
자활사업연구	1	1	100	1	1	100
홍보	135	135	100	138	135	102.2
연대사업	159	8	237.5	25	16	156.3

- '2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광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94.31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표> 서울광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구분	평가지표	2022년	2023년
내용	지역자활 지원 _ 49점 (컨설팅, 취·창업지원 연계, 교육, 홍보, 지역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46.30	46.25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및 특성화 지원 _ 34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광역자활기업 경쟁력, 공공·민간 자원 투입 연계사업)	29.88	29.48
	지역사회 협력 _ 7점 (지역사회 내 협력사업 추진실적, 우선구매 추진실적)	6.88	6.88
	조직운영 _ 10점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조직 운영 관리)	9.70	9.70
	<b>합계</b>	<b>92.76</b>	<b>92.31</b>
	[가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_ 2점 (중앙자산 키움펀드 지원실적)	2	2
	<b>총 합계</b>	<b>94.75</b>	<b>94.31</b>

- 해당 사무는 2025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등급을 받아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임.

**3 종합의견**

-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근로와 연계된 사회서비스의 한 형태이자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자활사업은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들과 유사하게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달과 시행이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서비스의 내용을 획일화하기 어렵고 제공자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음.<sup>5)</sup>

- 본 사무는 서울시 내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활사업들을 광역단위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인 종사자의 전문적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보완, 예산집행율이 연도말에 집중되는 현상 지양, 창업·마케팅 등 특화교육의 광역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

5) 백학영 외(2011). 자활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보건사회연구 31[2], 2011, 03-35.